

전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40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1. 4. 13.

판결 선고2021. 5. 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30.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1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약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D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                 |              |       |               |
|-------------------|-----------------|--------------|-------|---------------|
| (1) 2019. 04. 30. | 금 10,000,000 원  | 시장기준금리+8.04% | 연 15% | 2024. 04. 30. |
| (2) 2019. 09. 16. | 금 20,000,000 원  | 시장기준금리+7.33% | 연 15% | 2024. 09. 16. |
| (3) 2016. 04. 29. | 금 120,000,000 원 | 기준금리+2.36%   | 연 15% | 2021. 04. 27. |
| (4) 2020. 02. 07. | 금 100,000,000 원 | 기준금리+2.78%   | 연 21% | 2020. 04. 29. |

나. 또한 소외 D은 2014년에 원고의 F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소외회사가 2018년에 원고의 F카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소외 D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위 대출 중 (1)항 내지 (3)항 대출에 관하여 2020. 2. 8.부터, (4)항 대출에 관하여는 2020. 2. 7.부터 연체가 발생하였고, D과 소외 회사의 F카드 사용대금도 2020. 2. 7.부터 연체가 발생하였다.

라. 2020. 5. 기준 위 대출원금과 연체된 약정이자 및 F카드사용대금 연체금 및 약정이자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항 (1)대출 금 8,696,902 원정 (= 대출원금 8,499,966 + 미수이자 196,936)

가항 (2)대출 금 19,145,316 원정 (= 대출원금 18,666,648 + 미수이자 478,668)

가항 (3)대출 금 85,055,505 원정 (= 대출원금 84,000,000 + 미수이자 1,055,505)

가항 (4)대출 금 98,179,993 원정 (= 대출원금 97,129,089 + 미수이자 1,050,904)

나항 ① 카드사용대금 516,758 원정 (= 카드원금 504,760 + 미수이자 11,998)

나항 ② 카드사용대금 3,076,229 원정 (= 카드원금 3,000,000 + 미수이자 76,229)

마. D은 2020. 1. 3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20. 1. 30.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12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D은 2020. 1. 29.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G주식회사에 101,068,05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H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77,442,735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가액 39,650원의 군산시 I 구거 93m<sup>2</sup> 중 1/21지분을 보유한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G 주식회사,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채무자의 무자력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D 및 소외 회사(D과 소외 회사와 함께 'D 등'이라 칭한다)와 원고 사이의 대출 약정 및 카드거래약정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고, D 등은 2020. 2. 7.경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 등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및 카드대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출금 및 카드대금청구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D은 이 사건 매매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상태이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1) 피고는 D과 그 남편인 K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일부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은영**

별지